

특수지근무수당 지급 특수기관 및 등급(제2조제2항 관련)

| 특수기관                   | 등급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해발 8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기관 | 가  |
| 2. 유치장(호송출장소를 포함한다)    | 나  |
| 3. 산악구조대               | 나  |
| 4. 검문소                 | 라  |